

2016년 자매결연지 청소년 교류캠프 운영 약정서

서울특별시 강북구(이하 “강북구”라 한다)와 서울시립 강북청소년수련관(이하 “청소년수련관”이라 한다)은 강북구와 자매결연도시 청소년간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통한 우호증진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강북구가 운영하는 2016년 청소년 교류캠프 운영과 관련하여 상호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.

제 1조 (목적) 이 약정은 『2016년 자매결연지 청소년 교류캠프 운영』사업(이하 “사업”이라 한다)의 운영을 강북구가 청소년수련관에게 위탁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위탁범위) 강북구가 청소년수련관에게 위탁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사업명: 2016년 자매결연지 청소년 교류캠프 운영
2. 사업기간: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
3. 운영예산: 금17,670,000원(금일천칠백육십칠만원)
4. 주요내용: 자매결연지 간 청소년 교류·수련·문화 활동

제 3조 (약정기간) 이 약정에 의한 기간은 2016년 사업 종료시까지로 한다.

제 4조(의무와 권리) ① 청소년수련관은 강북구의 위탁을 받아 본 사업의 운영 및 진행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강북구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수련관 책임 하에 진행한다.
② 강북구는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.

제 5조 (안전대책 등) ① 청소년수련관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.

②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. 수련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및 비상시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
2. 청소년활동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
3. 성폭력·성희롱 예방 및 대처요령에 관한 사항
4. 그 밖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안전에 관한 사항

③ 청소년수련관은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에게 질병·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의료조치가 필요하거나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6조(보험 가입)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·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제 7조(사업비 집행 및 정산) ① 청소년수련관은 사업비를 강북구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,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,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·집행하여야 한다.

② 청소년수련관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서를 작성 제출하며, 집행 잔액이 발생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사업이 취소될 경우 취소 당일까지 소요된 비용을 실비 정산하여 강북구에 반납한다.

제 8조 (배상 및 면책) 청소년수련관은 제2조의 위탁내용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요인에 의한 경우 또는 청소년수련관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9조(약정의 효력 등) ① 이 협약은 서명 일부터 사업기간이 만료되거나 약정의 해지 등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. 다만, 민·형사상의 사건·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·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·사고와 관련한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.

② 이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강북구와 청소년수련관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년 6월 일

“서울특별시 강북구” (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)

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박검수 (인)

“서울시립 강북청소년수련관” (서울특별시 강북구 4.19로 74)

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장 김진상 (인)